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사)에코붓다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01-82-05997
③ 대표자 성명	최석호 (법륜스님)	④ 공익법인등 구분	민법상 비영리법인
⑤ 전자우편주소	ecobuddha@jungto.org	⑥ 사업연도	2020.1.1. ~ 12. 31
⑦ 전화번호	02-587-8905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1994년 6월 29일
⑨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1길 42 정토사회문화회관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	8월	7,053,000	569,365	52,088,364
1월	7,230,000	1,217,457	6,012,543	9월	6,797,000	676,240	58,209,124
2월	8,795,000	4,179,835	10,627,708	10월	1,883,101	1,883,101	63,695,523
3월	7,905,000	1,446,381	17,086,327	11월	11,882,586	11,882,586	63,501,937
4월	7,807,000	1,043,168	23,850,159	12월	10,258,114	10,258,114	65,538,834
5월	7,271,000	916,962	30,204,197	합계	105,755,511	40,216,677	
6월	1,355,4000	1,850,768	41,907,429	차기이월	-	-	65538834
7월	7,990,000	4,292,700	45,604,729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⑭ 지출월	⑮ 지급목적	⑯ 지급건수	⑰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⑱ 금액
2020-01	쓰레기제로-환경실천판넬 제작 외	16	세잎클로버 외	1,217,457
2020-02	음식물쓰레기제로-퇴비함 설치 외	20	세경팜 외	4,179,835
2020-03	나눔과 비움, 나비장터 사업 외	18	세잎클로버 외	1,446,381
2020-04	환경실천 대안물품 제작 및 지원 외	13	카뱅	1,043,168
2020-05	연대활동 분담금 외	10	시민사회네트워크 외	916,962
2020-06	쓰레기제로-환경실천가이드북 제작 외	17	신명기획 외	1,850,768
2020-07	에코붓다 격월 활동소식지 제작 외	20	신명기획	4,292,700
2020-08	회원관리프로그램 사용 외	7	휴먼소프트 외	569,365
2020-09	쓰레기제로10년사 자료집 제본 외	11	영동상사 외	676,240
2020-10	쓰레기제로사업 외	14	시민사회네트워크 외	1,883,101
2020-11	음식물쓰레기제로-휴퇴비화사업 외	16	흙살림연구소 외	11,882,586
2020-12	에코붓다 활동소식지 제작 외	14	신명기획 외	1,374,400
⑲ 연도별	⑳ 지급목적	㉑ 수혜인원	㉒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㉓ 금액
2020	쓰레기제로운동	2,500	흙살림연구소 외	19,530,700
	조사연구사업	850	세경팜 외	892,970
	연대사업	100	시민사회네트워크 외	3,997,000
	홍보사업	1,000	신명기획 외	8,270,680
	경상비	50	휴먼소프트웨어 외	7,525,327
합 계		3,000		40,216,677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㉔ 지출월	㉕ 국가명	㉖ 지급목적	㉗ 지급건수	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㉙ 금액
㉚ 연도별	㉛ 국가명	㉜ 지급목적	㉝ 수혜인원	㉞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㉟ 금액

작성 방법

1. 기본사항 : ① ~ ⑨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⑩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⑭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⑰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⑰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⑱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⑳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